

For 2013 Kautm워크샵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 운영 매뉴얼 ver2.0 해설

2013. 01. 17.

재단법인 성동벤처밸리

사무국장 김유신

목 차

Part 1 매뉴얼 ver2.0의 구성과 의미

Part 2 매뉴얼 주요 내용 해설

Part 3 부록의 활용과 Q&A

Part 1 매뉴얼 ver2.0의 구성과 의미



<선행 참고 문헌>

- 2008년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_(Postech)
- 2009년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사례_(한양대)
- 2011년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성과 처리에 관한 연구
(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 2012년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현황 및 소개(매뉴얼 ver1.0)
(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메뉴얼 구성(목차)

Chapter I - 기술지주회사 개요

1. 기술지주회사 제도의 이해	6
가. 기술지주회사란?	6
나. 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배경	8
다. 기술지주회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1
라. 기술지주회사 관련 법규의 이해	12
2. 기술지주회사 현황	15
가. 설립 현황	15
나. 유사한 사업화 모델과의 비교	16

Chapter II -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1. 설립 개요	18
가.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세 가지 유형	18
나. 대학 내부의 설립 프로세스	19
다. 대학 외부의 설립 프로세스	21
2. 설립준비 단계	23
가. 설립준비와 관련된 정부지원사업	23
나. 설립준비 프로세스	24
다. 주요 실무내용	25
3. 설립인가 단계	31
가. 설립인가 신청 및 심의	31
나. 기술지주회사 법인설립 실무	33

Chapter III -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1. 경영일반	40
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업무	40
나. 관계 법령에 의한 기술지주회사 업무	43
2. 자회사 설립 및 경영지원	45
가. 자회사 설립방식	45
나. 자회사 설립실무	48
다. 자회사 경영지원	51
3. 투자회수 및 보상	54
가. 투자회수(Exit)	54
나. M&A(인수합병)	55
다. IPO(기업공개,주식공모)	57
라. 이익배당	60
마. 발명자 보상	63

Chapter IV - 부록

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FAQ	66
2.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단계별 점검사항	72
3. 연구자용 기술지주회사 안내서	80
4.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작성가이드	88
5. 정관, 사규(취업규칙) 예시	95
6.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교과부 고시 제2012-9호)	120
7. 기술지주회사 설립신청 및 운영에 따른 각종 양식	123
8. 기술사업화 발명자보상 계약서 예시	129

기술지주회사의 최근 변화

□ 대학 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 완화(2011년 7월 개정 산촉법)

-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의무한도 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부담을 줄였으며,
-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초기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체 영리행위**와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자회사를 직접 설립 뿐만 아니라 기 설립된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를 통한 운영이 가능

Part 2 매뉴얼 주요 내용 해설

대학 기술의 직접 사업화_주요 제도 비교

구분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실험실(공장)창업
개념	○ 대학(산학협력단)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전문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자회사를 성공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조직으로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모델	○ 대학(산학협력단)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설립하는 회사의 지분을 산학협력단이 직접 소유, 지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하는 방식	○ 발명자가 관련 법률에 근거, 학교장의 승인으로 창업하고, 창업기업의 실질적 경영권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모델 (개인 영리사업의 성격)
소관법률 (인가부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학 내규(학교장)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사업화 ○ 각 (창업)회사에 참여하는 교직원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소속 대학의 장이 승인하는 겸직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창업기업에 임직원으로 활동 가능 ○ 상법상의 영리회사로 설립, 운영(산촉법 상의 학교기업과 별개) 		
지분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 20% 이상 보유 ○ 현물출자금액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발명자 보상 ○ 현물과 현금 투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단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지분 20% 이상 보유 ○ 대학이 설립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를 둘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에 의한 독자적 지분구성(일반적으로 대학과의 계약에 의해 소규모의 지분을 기부, 통상 5% 이하)

대학 기술의 직접 사업화_주요 제도 비교

<p>지재권 (라이센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로 지재권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회사로 지재권 출자(현금만으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시, 창업회사로 기술 이전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재권은 대학소유가 기본, 필요 시 계약에 의해 개별 실시권 확보 또는 양수도(계약에 따라 기술료 지급)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의 사업실패 시, 기술지주회사가 완충역할 수행(회계, 법률적 책임 등) ○ 사업화 전문가들의 경영지원을 통해 사업성공률 제고(경영관리, 파이낸싱 등) ○ 발명자의 과도한 경영참여 부담 및 재무적 부담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산학협력단) 직접 설립으로 초기 비용의 절감효과 ○ 사업화 성공 시, 중간 버퍼의 생략으로 기대이익의 상대적 규모가 산술적으로는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창업자)의 독자적인 경영과 기업의 소유형태로 사업화의 자율권 확보 ○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자(교수, 발명자) 지분을 확보 가능
<p>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초기 설립,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 ○ 자회사의 단독설립 외, 상대적으로 낮은 지분율 - 사업의 성공률과 규모 제고를 통해 전체 수익 발생을 키우는 보완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의 사업실패 시, 대학(산학협력단)으로 직접적인 충격이 전달(회계, 법률 등)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수가 늘어날수록 산학협력단의 관리, 통제, 지원의 어려움 발생(행정력으로 전문적 사업화 수행 사실상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패의 책임은 창업자 ○ 낮은 성공률(경영경험 부족 및 수업, 연구, 기타 활동 병행이 일반적) ○ 사업실패 시, 의도 되지 않은 대학의 피해 발생 가능(사업에 대한 통제, 관리 어려움)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 현황
(2012. 09. 현재)

- 산측법(제36조의2)과 기측법(제21조의3)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를 공동으로 설립이 가능함.

- 2011년 산측법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공식 명칭이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에서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로 변경됨.

	회사명	설립일	자본금(단위: 억원)			자회사 수
			현금	현물	계	
1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주)	'08. 09.	24.00	28.34	52.34	9
2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	08. 10.	85.70	42.51	128.21	20
3	삼육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	'09. 02.	1.68	3.42	5.10	2
4	서강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	'09. 03.	12.32	23.98	36.30	8
5	경희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	'09. 06.	2.45	3.54	5.99	1
6	(주)강원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09. 05.	46.42	39.02	85.44	19
7	고려대학교 기술지주(주)	'09. 10.	45.00	57.84	102.84	8
8	인천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	'09. 12.	7.50	11.62	19.12	4
9	동국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	'10. 03.	7.20	19.96	27.16	5
10	부산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	'10. 03.	10.65	41.70	52.35	5
11	단국대학교 기술지주회사(주)	'10. 09.	2.12	0.91	3.03	2
12	동신대학교 기술지주회사(주)	'10. 10.	2.00	4.74	6.74	3
13	조선대학교 기술지주회사(주)	'10. 11.	3.00	3.21	6.21	1
14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주)	'11. 05.	10.00	32.29	42.29	3
15	연세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	'11. 05.	36.10	25.55	61.65	9
16	(주)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11. 06.	12.90	16.38	29.28	2
17	세종대학교 기술지주회사(주)	'12. 06.	4.90	2.13	7.03	-
18	가톨릭대 기술지주주식회사	'12. 05.	1.94	3.56	5.50	-
19	포항공대 기술지주주식회사	'12. 06.	7.00	3.78	10.78	-
20	제주대 기술지주주식회사	'12. 08.	2.73	1.17	3.90	-
21	성균관대 기술지주주식회사	'12. 06.	5.00	11.73	16.73	1
22	동아대 기술지주주식회사	'12. 10.	10.00	5.01	15.01	-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정부지원사업의 활용

●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관련

- ① **보유기술사업화지원사업 - 한국연구재단(교과부)**
 -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였거나, 설립을 준비 중인 대학의 산학협력단
 - 기술지주회사 최초 설립, 추가 자회사 설립, 학교기업의 자회사 전환
- ② **기술지주회사 설립지원단 컨설팅 프로그램 - 한국연구재단(교과부)**
 - 교과부에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신청 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설립지원단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 ③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식경제부)**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사업활성화를 지원

● 자회사 설립·운영 관련

- ① **산학연공동연구법인지원사업 - 한국연구재단(교과부)**
 - 기술보유기관인 대학·출연(연)과 기술의 사용자인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개발전문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사업화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
- ②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식경제부)**
 - 글로벌시장 창출·선점 가능성이 높은 우수BM(Business Model)의 발굴 및 사업화기획 과정을 지원하고, 유망기술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 성능인증, 시제품제작 등 R&D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
- ③ **보유기술직접사업화사업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중소기업청)**
 - 대기업 수요와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이 대기업과 공동으로 법인창업을 통한 직접사업화를 추진하고,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④ **기술혁신개발사업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등(중소기업청)**
 -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포함 성장단계별 상용화 R&D를 지원하는 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적절한 과제를 선택하여 신청
- ⑤ **예비기술창업자육성지원사업 등 - 창업진흥원(중소기업청)**
 - 대학,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예비(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를 지원하는 사업
- ⑥ **엔젤투자지원사업 - 엔젤투자지원센터(중소기업청)**
 - 매칭펀드를 통한 민간엔젤클럽의 초기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
- ⑦ **지역별 지원 사업 - 지자체, 지역 R&D사업화 공공기관**
 - 각 지자체 또는 지역 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서울시의 기술지주회사 사업화지원사업 등

기술지주회사 설립 유형에 따른 장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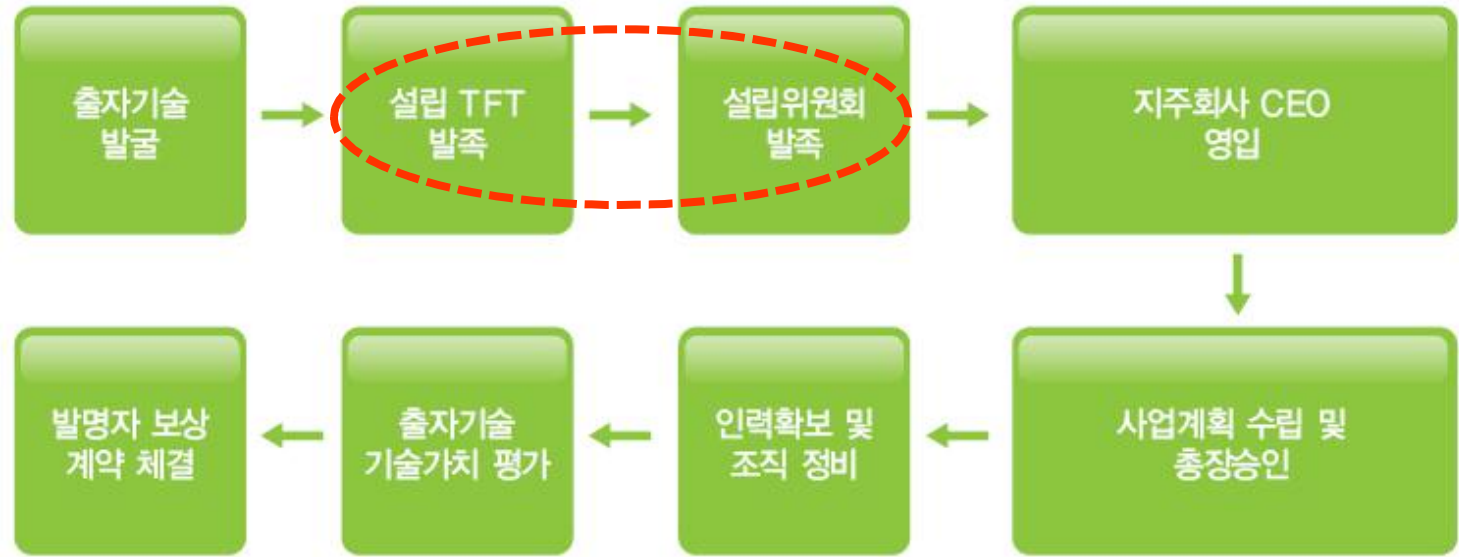
구분	장점	단점
단독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자율성 • 기술발굴부터 자회사 설립까지 TLO등과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협조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충돌배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 • 대학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상존 • 대표이사의 산학협력단장 겸임 시 책임경영 한계
공동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또는 전문기관 참여 시 투자재원 확보 및 마케팅 역량 확보 등에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관(기업, 전문기관)과의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 상존
연합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참여기관 및 지역기관의 기술, 사업화 인프라 및 역량의 결집 및 공동 활용 • 자금조달 상대적 용이(다수의 설립 주체) • 전문경영인 영입을 통한 책임경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 상존 • 대학 별 기술지주회사 지분율이 상이할 수 있으나, 역으로 대학 간 선의의 경쟁 유도 가능

*고려대, 연세대

** 강원연합, 전북연합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내부 프로세스

단독
설립



연합
설립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외부 프로세스

기본
절차



주요
내용

설립절차	세부내용	업무담당기관
1. 지주회사 설립 결정 1) 설립형태 결정 2) 출자계획 검토	단독설립, 공동설립 출자자분금(현금, 현물) 결정, 설립일정 등	산학협력단 및 유관업체 산학협력단 및 유관업체
2. 기술가치평가	기술의 평가금액 산출	정부지정 기술평가기관
3. 교과부 설립인가	설립인가	교과부
4. 발기설립 1) 발기인구성 회의 2) 발기인의 주식인수(현금) 3) 변태설립 신고(현물출자) 4) 발기인총회 개최 5) 이사회개최 6)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7) 설립등기 8) 출자기술의 권리(명의) 이전 9) 사업자등록	정관작성,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주식의 형약 및 배정 발기인은 납입기일까지 주금납입 완료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인가 정관승인, 이사 감사 선임, 현물출자 원료 보고 등 대표이사 선임 결의 등록세, 교육세 납부 법인설립 등기 현물출자재산의 권리이전(산학협력단→기술지주회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발기인 발기인 관할 지방법원 발기인 발기인 관할 구청 법인세과 관할 등기국 특허청 관할 세무소
5. 후소처리사항 1) 4대보험 신고 2) 취업규칙 작성·신고 3) 금융거래 개설 4) 겸직허가신청 5) 설립기념식 개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상시10인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신고 법인통장, 인터넷뱅킹, 법인신용카드 개설 학교소속 교수가 임원 등 겸직하는 경우 겸직허가신청 설립기념식 개최	관할 지역본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해당 거래은행 대학 해당 본부 기술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각종 신고 시 주의사항

구 분	내 용
1. 발기인(조합)의 구성	- 기술지주회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식회사로 발기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독설립의 경우 기관(산학협력단)이 단독 발기인이 되고, 공동(또는 연합)설립의 경우 출자하는 각 기관이 공동발기인이 됨.
2. 변태설립을 위한 정관의 작성	-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은 법인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회사의 설립시 자본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 없음. 즉, 무효가 됨.
3. 법인설립 등기 신청기한	- 교과부 설립인가와 법원의 현물출자 변태설립인가가 완료되면, 2주 내에 대표이사(또는 대리인)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4. 사업자등록 신청기한	-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그렇지 않으면 관련 세금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업자등록 신청 전까지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
5. 4대 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 1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신고 의무가 있음.
6. 현물출자 부가가치세 신고	-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의 활용이 필요함.

자회사의 발굴 및 설립

- 자회사 발굴 방식

- ① 대학 내부시스템 활용방식
- ② 공모방식
- ③ 외부수요 접근방식
- ④ 라이선싱의 사업화 전환방식

- 자회사 설립 유형

- ① 단독설립 방식
- ② 조인트벤처 방식
- ③ 자회사 편입 방식

※ 학교기업의 자회사 化

Part 3 부록의 활용과 Q&A

부록의 구성 및 활용

1. 자주 묻는 질문_FAQ
2.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을 위한 체크리스트
3. 연구자용 안내서
4.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5. 정관, 사규(취업규칙) 예시
6.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교과부 고시 제2012-9호)
7. 기술지주회사 설립신청 및 운영에 따른 각종 양식
8. 기술사업화 발명자보상 계약서 예시

● FAQ

1. 우리 대학의 여건 상, 기술지주회사를 단독으로 설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 기술지주회사에 추가로 참여하거나, 단독 설립 후 타 기술지주회사와 합병하는 모델도 가능한가요?
2. 산촉법과 기촉법 상의 기술지주회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3. 사업화 유망기술을 보유한 발명자(교수)가 실험실창업을 고집하거나, 사업성이 부족해 보이는 기술로 기술지주회사 방식의 사업화를 요구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기술지주회사로의 출자를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 평가기관의 선택기준은?
5. 교과부에 기술지주회사 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심의위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6. 우리대학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자회사로 부터 이익을 내오기 전, 기술지주회사를 최소의 예산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 기술지주회사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리업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주세요?
8. 자회사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주회사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9. 출자기술에 의해 설립된 자회사에 추가적인 IP(특허)의 공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 Check list

설립기획 단계	◦ 대학 내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수요(기술자원)가 있는가?
	◦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이상의 기반 (현금, 추진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기술지주회사 설립 유형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가?
	◦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분석과 이에 기반 한 설립의 기본방안을 내부에서 승인 받았는가?
설립준비 단계	◦ 설립준비를 위한 프로세스를 확인하였는가?
	◦ 공식적인 설립 추진위원회(의사결정 기구)를 적절하게 구성, 진행하고 있는가?
	◦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TF팀(실무추진단)을 합리적으로 구성, 운영하는가?
	◦ 기술지주회사 임직원(대표이사 등) 선임에 대한 기준, 방식 및 시기를 결정 하였는가?
	◦ 출자 대상기술에 대한 최종 선별 시, 시장성을 고려하였는가?
	◦ 최종 선별된 출자기술에 대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 및 보상 규정을 정비 하였는가?
	◦ 가치평가 받은 기술의 현물출자(변태설립사항)를 위해 관할지방법원(합의판사부)의 인가 절차를 확인 하였는가?
◦ 정부 및 유관기관의 기술지주회사(자회사) 설립·운영지원사업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 하였는가?	
설립인가 단계	◦ 설립인가를 위한 프로세스를 확인하였는가?
	◦ 발기인 및 발기인조합의 구성에 있어 문제는 없는가?
	◦ 정관에 기재되는 사항을 정확히 작성 하였는가?
	◦ 설립인가신청서(설립계획서, 구비서류)를 관련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작성 하였는가?
법인등기 단계	◦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프로세스를 확인하였는가?
	◦ 현금 및 현물 출자에 따른 절차와 준비사항 확인 하였는가?
	◦ 법인설립등기 신청 기한 및 구비서류를 확인 하였는가?
	◦ 각종 신고사항을 이행 하였는가?

최근 몇 가지 Issue

1.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등기 시 지방세 납부의 건
2. 자회사 설립(편입)의 방식은 어떤 방법까지 허용되나?
3. 기술지주회사 CEO의 전문경영인 체제와 내부 보직교수 체제
4. 발명자보상 방법의 확대 변화와 바람직한 방향
5. 기술지주회사의 자생력을 위한 혁신적 노력과 변화

- 감사합니다 -

Q & A